

## 제 10장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용 반영여부

### 10.1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에 대한 개요

- 본 사업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, 촉진구역에 대해 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’에 의해 2007년 7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음
- 도시재정비촉진구역은 환경정책기본법 [별표 2]에 의해,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지구지정의 경우 ‘시·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는 때’이나 ‘비고 6’과 같이 도시지역은 제외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바,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었음
- 한편, 금번 사업지구인 도시개발구역내 GB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는 2008년 11월에 협의완료 하였으며 GB구간에 대한 협의내용 반영사항을 제시하였음

### 10.2 협의의견 반영여부

<표 10.1 - 1>

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반영여부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협 의 내 용  | 반영여부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----|
| 1. 개발제한구역(GB) 해제 및 입지 관련 : 조건부 동의 | ○ 동 계획지역은 ‘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’상 일반조정가능지(지역현안사업) 및 ‘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’상 시가화예정용지(공업)로 확정 되었고 환경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(환경평가 3등급 17.1%, 4·5등급 82.9%) |      |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| 협 의 내 용  | 반영여부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| <p>○ 다만, 해제 후 산업시설용지 등으로 개발하고 하는 지역은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(금본G)이나 제1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(2004~2010년)의 오염부하량이 할당되지 않아 1단계 계획으로는 입지 및 개발이 불가함.</p> <p>- 따라서 동 계획지역은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(2008. 10. 31 환경부훈령 제807호)에 따라 제1단계 계획기간의 지역개발 부하량의 60% 범위내 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</p> <p>·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, 구체적인 오염물질 배출부하 산정·검토 후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은 경우에 한해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추진</p> | <p>○ 본 사업지구는 수질오염총량 대상유역(금본G)에 해당되며 수질오염총량관리 1단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도시개발사업 진행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검토시 포함시킬 계획임</p> <p>·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, 구체적인 배출부하를 산정·검토후 할당량을 받은후 사업추진 하겠음</p> | <p>미반영</p> <p>미반영</p> |
| 2.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| <p>○ 검토서에 제시된 토지이용계획(안)대로 하되, 산업시설용지와 면하는 도시계획 도로경계부에는 도시경관 부조화방지 등을 위해 적정폭(5~10m내외)의 완충녹지대를 확보하는 방안 강구(산업시설용지→완충녹지로 변경)</p>   | <p>○ 산업시설용지와 면하는 국도17호선 도로경계부에는 도시경관 부조화 방지 등을 위해(5~10m내외)의 완충녹지대를 확보하였음</p>   | 반영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p>○ 사업지구 동측의 임상이 양호하고 자연경관측면에서 보전 가치가 높은 임야는 검토서에 제시한 대로 현 상태로 원형보전존치(녹지자연도 7등급의 35%, 9,201㎡ 중 약 3,200㎡ 이상)</p>   | <p>○ 사업지구 동측(국도 17호선 동측) 녹지자연도 7등급 지역에 대해 일부지역은 제척 및 보존하였음</p>   | 반영                 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| 협 의 내 용  | 반 영 여 부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|
| 3. 재정비촉진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| <p>○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아래 의견을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지역(금본G)인바, 「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」(환경부훈령 제807호, '08.10.31) 제30조에 따라 오염부하량 산정 및 개발부하량 할당 증빙서류 첨부 제시</li> </ul> | <p>○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」(환경부훈령 제807호, '08.10.31) 제30조에 따라 오염부하량 산정 및 개발부하량 할당 증빙서류 첨부 제시하겠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반영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형개변 및 생태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현재의 자연지형을 이용한 부지 조성계획 수립</li> <li>· 절토고는 가급적 6m 이하 유지, 6m 이하 유지가 어려운 곳은 최대 9m이하 유지 방안 권고</li> <li>· 6m이상 절토고 발생 지역은 주변지역의 생태·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복원 방안 강구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형변화 및 생태경관 훼손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현 지형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</li> <li>· 지형 훼손 최소화를 위한 과도한 절토를 지양하고, 현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부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</li> <li>· 6m이상 절토고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비탈면안정경사를 적용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수립하였음</li> </ul> | 반영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차면, 도로 등 포장 지역 등은 투수함양 제고 및 강우 유출량 최소화 등을 위해 투수성 포장재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원·녹지를 제외한 인공지반의 투수성포장계획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</li> </ul>  | 반영  |

| 구분           | 협 의 내 용  | 반 영 여 부   | 비고 |
|--------------|--|---|----|
| 4. 승인기관 조치사항 | ○ 본 협의내용은 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, 협의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미반영 부분에 대하여 우리부와 별도로 협의한 후,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함. | ○ 본 협의내용은 사업계획안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, 협의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미반영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한 후, 계획안이 확정되도록 하겠음 | 반영 |
|              | ○ 본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, 개발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부분에 대한 환경대책을 마련한 후, 우리부와 다시 협의하여야 함.          | ○ 본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, 개발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부분에 대한 환경대책을 마련한 후, 다시 협의하겠음         | 반영 |